

하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 남 시
【안전총괄과】

하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5. 2. .

제 출 자 : 하 남 시 장

1. 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2013. 8. 6. 공포, 2014. 2. 7. 시행)에 따라 관련내용을 반영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가. 현행 인적재난·기반재난을 “사회재난”으로 통합하고, 인적·기반재난, 기반체계, 인적재난대책기간, 기반보호총괄관 등의 용어 폐지(안 제2조)
- 나. 재난의 상황관리 및 응급조치, 재난의 수습활동,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행정상·재정상 조치,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등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 명확화(안 제4조)
- 라. 자연·사회재난별 실무반 편성기준을 단계별로 구분하고, 실무반을 13개 협업기능별로 편성하여 임무·역할 부여 등 운영체제 정비(안 제7조)
- 마.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여부, 실무반 편성 범위 등을 협의하는 상황판단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바. 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파견근무자의 임무에 관한 사항(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 사. 자체복구계획, 재난예방대책, 응급대책, 사회재난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확정하기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구성·운영 사항(안 제12조)
- 아.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소집, 실무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

자.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활용 조항 신설, 재난현장의 민간단체 대응인력 파견지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협조체계에 관한 사항(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차. 재난관리책임기관과의 협조체계 및 재난상황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및 제19조)

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타. 사회재난의 피해상황 신고에 관한 사항(안 제21조)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4조의5, 제66조, 제77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21조의2, 제24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6.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7. 입법예고 결과

가. 입법예고기간 : 2014년 11월 12일 ~12월 1일 (20일간)

나. 의견내용 : 대한적십자사 경기중부센터에서 의견제출 (검토의견 참조)

8. 부서협의 결과 : 예산, 규제개혁,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가. 협의기간 : 2014년 11월 5일 ~ 11월 12일(8일간)

나. 협의내용

- 1) 성별영향분석평가 : 성별영향평가 반영(별지 제1호서식 남/여 표기)
- 2) 규제개혁 : 의견 없음

9. 기타 참고사항 : 덧붙임

- 입법예고 검토 의견
-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통합표준안

10. 관련부서 : 경기도 재난대책담당관실

하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하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하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같은 호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자연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자연재난의 총괄·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가. 여름철의 경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 나. 겨울철의 경우: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3.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하며,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상시대비단계: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호우·대설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 또는 특별한 자연재난 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자연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경우

나. 사전대비단계: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정보 또는 호우·대설주의보가 발표되어 자연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경우

4. “비상단계”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의 효과적인 대비·대응 및 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위하여 실무반을 편성하여 하남시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난안전대책본부”라 한다)를 운영하는 단계를 말하며,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주의보 또는 호우·대설정보가 발표되어 자연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하남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를 말한다.

5. “예방”이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6. “대비”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상황 하에서 수행하여야 할 제반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7.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8.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9.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제2장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및 구성

제3조(기능)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총괄·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요구
5.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6.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경기도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7. 그 밖에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차장은 부시장이 되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보좌한다.
3.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국의 장이 되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보좌하면서 재난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4. 담당관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해당 재난의 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이 된다.
5. 실무반은 소속공무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대응 및 수습업무를 수행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두는 재난안전상황실의 장(이하 “재난안전상황실장”이라 한다)은 사전대비단계 또는 비상단계에 통제관을 보좌하고, 그 외의 기간에는 재난안전상황실의 업무를 총괄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 등 재난수습업무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5조(직무대행)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4조제1항 각 목의 차장·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근무체제

제6조(운영기간) ①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재난대책기간
2. 제1호 외의 기간 중 기상이변 등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운영체제 및 실무반 편성) ①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비단계: 재난안전상황실장이 담당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실무반의 기능을 수행하며 편성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비상단계

가. 자연재난: 비상단계는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나. 사회재난: 통제관 및 담당관의 역할은 해당 재난수습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국장 및 과장이 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실무반별 업무와 역할은 별표 5와 같다.

② 비상단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제8조의 상황판단회의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발생 등에 대비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협업에 따른 사전 협력체계를 관계 유관기관 및 단체(민

간단체를 포함한다) 등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 따른 비상단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실무반원은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⑤ 재난안전상황실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상황판단회의) ①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1. 비상단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분석 및 재난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유관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한다.

1. 재난안전상황실장
2.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3. 재난과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 직원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제4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신속

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사람은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 근무인력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력은 관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한 파견근무 대상자의 명단과 비상연락체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11조(파견근무자의 임무 등) ①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 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구성·운영

제12조(구성 및 운영 등) ①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한다.

1.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국장 및 과장
 2. 그 밖에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③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생한 재난을 관장하는 소관부서의 장이 된다.
- ④ 대책본부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①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구두로 회의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
- ②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 ③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을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④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나 그 밖의 외부 전문가를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4조(실무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 대책본부회의 안건의 사전 검토, 통합지원대책 및 실무반 운영 등 실무적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책본부에 실무회의(이하 “실무회의”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실무회의는 통제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과장급으로 구성할 수 있다.
- ③ 통제관은 실무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관련 재난분야 전문가, 지역 관계자 등 그 밖에 회의에 필요한 사람을 참석시킬 수 있다.

제5장 재난상황의 관리 및 통합지원체계 구축

- 제15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5에 따라 작성한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발생 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이외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16조(재난현장 상황관리)** ①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 등 민간단체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②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 및 여론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재난상황 모니터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17조(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단체의 협조체제 등)** ①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 대한적십자사·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 및 각종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유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합동훈련은 도상훈련·전산훈련 및 실제훈련으로 구분하여 상황에 따라 필요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훈련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18조(인력 및 장비 동원체제 구축 등) ①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 중 동원 가능한 군병력·예비군·사회봉사명령자·공무원·경찰·소방공무원·민방위대원 및 공공근로요원 등의 인력과 집게차·분뇨차 및 청소차 등 특수장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발생에 따른 응급복구에 대비하여 제1항의 인력 및 장비에 대한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원활한 응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9조(재난상황 보고 등)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난상황의 보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다.

제20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 ①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금액 및 복구비용을 산정하

는 때에는 별표 6의 지원금액 산정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③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초로 법 제66조 제4항에 따라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21조(사회재난의 피해상황 신고 등) ①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재난 피해 신고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피해신고를 받은 동장은 피해사실을 확인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성한 피해대장은 복구계획 수립 및 피해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피해가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2조(재난상황 홍보 등)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주민에게 재난상황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3조(대책본부 문서관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명의로 생산하는 문서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기준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제24조(전결사항) 재난안전대책본부 사무의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명		안전총괄과
입 안 자	부서장 직위·성명	안전총괄과장 최정호
	팀장 직위·성명	안전협력팀장 임국남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임국남 790-5480

[별표 1]

재난수습 주관부서(제4조제3항 관련)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재난수습 주관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주전파 재난 · 정보통신 관련 사고 ·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정보통신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교육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구(共同溝) 재난 · 도로, 교량, 하천관련시설 사고 · 정부중요시설(시 청사)사고 · 주민자치센터 시설 사고 	건설과 회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 문화예술관련시설 · 체육관련시설 · 문화재시설 사고 	문화체육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 질병 · 저수지 사고 · 농업기반시설관련 사고 	농업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 원유수급 사고 · 전력 사고 · 사업장(기업체)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기업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 재난 · 보건의료 사고 	보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 황사 ·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 상수도관련 시설 사고 ·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환경보호과 상수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불 · 산사태 · 공원시설 사고 	공원녹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 · 가뭄 · 화산 · 풍수해 · 지진 · 낙뢰 ·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안전총괄과
<p>비고 1.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p> <p>2. 공공시설 중 지정되지 않은 시설은 재산관리관이 재난수습 주관 부서가 된다.</p>	

[별표 2]

준비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7조제1항제1호 관련)

1. 가동기준 : 평상시

- 가. 특별한 재난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
- 나. 호우, 강풍 예비특보 발효예상 전

2. 실무반 편성

본 부 장	시장
차 장	부시장
통 제 관	안전자치행정국장
담 당 관	안전총괄과장 (재난관리 관련 과장)
실 무 반	재난안전상황실에 소속된 공무원과 각 부서에서 파견된 인력이 실무반의 기능을 수행한다.

- 비고 : 1. 준비단계는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의 기능을 병행하여 수행한다.
2. 재난안전상황실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기관 직원을 파견 받아 실무반 근무인력을 보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3]

자연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7조제1항제2호 관련)

□ 비상 I 단계

가. 가동기준 : 태풍(대설), 호우 예비특보 발표 시

나. 실무반 편성

본 부 장	시장	
차 장	부시장	
통 제 관	안전자치행정국장	
담 당 관	안전총괄과장	
근무반(총20+ α 명)		담당부서
상황관리	반장	안전총괄과 팀장
총괄반 (3+ α 명)	상황전파 및 보고서 작성	안전총괄과
재난정보 수집 전파 지원 (17+ α 명)	농업지원과(1+ α) 기업지원과(1+ α) 건축과(1+ α) 건설과(1+ α) 공원녹지과(1+ α) 각 동 주민센터(12+ α)	

다. 근무방법

- (1) 상황관리총괄반 :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 업무를 관장한다.
- (2) 협업기능 실무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지역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근무 실·과를 확대 소집 할 수 있다.

□ 비상 2단계

가. 가동기준 : 태풍(대설), 호우 주의보 발효 시

나. 실무반 편성

분 부 장	시장	
차 장	부시장	
통 제 관	안전자치행정국장	
담 당 관	안전총괄과장	
근무반(69+ α + β 명)		담당부서
상황관리 총괄반 (5+ α 명)	반 장 (1)	안전총괄과 팀장
	상황전파 및 보고서 작성(3)	안전총괄과
	행정 지원(1)	자치행정과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 (64+ α)	자치행정과(2+ α), 안전총괄과(2+ α), 문화체육과(2+ α), 주민생활지원과(2+ α), 사회복지과(2+ α), 농업지원과(2+ α), 기업지원과(2+ α), 도시과(2+ α), 건축과(2+ α), 건설과(2+ α), 주택과(2+ α), 공원녹지과(2+ α), 보건위생과(2+ α), 각 동 주민센터(3+ α), 지역자율방재단(2+ α)	
재난관리책임기관(β)	하남소방서, 하남경찰서, 군부대, 한국전력공사 하남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동부지사, 대한적십자사 경기중부센터 등	

다. 근무방법

- (1) 상황관리총괄반 :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2) 협업기능 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 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지역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3)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재난상황에 따라 운영한다.

□ 비상 3단계

가. 가동기준 : 태풍(대설) · 호우경보 또는 재난 발생 시

나. 실무반 편성 :

본 부 장	시장	
차 장	부시장	
통 제 관	안전자치행정국장	
담 당 관	안전총괄과장	
근무반(305 + α + β 명)		
담당부서		
상황관리 총괄반 (5+ α 명)	반 장 (1)	안전총괄과 팀장
	상황 전파 및 보고서 작성(3)	안전총괄과
	행정지원반(1)	자치행정과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 (300+ α)	전부서 1/2 이상 근무 (300명 이상)	
재난관리책임기관(β)	하남소방서, 하남경찰서, 군부대, 한국전력공사 하남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동부지사, 대한적십자사 경기중부센터 등	

다. 근무방법

- (1) 상황관리총괄반 :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 · 운영할 수 있다.
- (2) 협업기능 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기능 및 실무반(지역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3)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재난상황에 따라 편성한다.
- (4) 자원봉사반과 언론보도반은 필요에 따라 운영한다.

[별표 4]

사회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7조제1항제2호 관련)

1. 가동기준

- 가. 재난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상 위험수준이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지역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실무반 편성

본 부 장	시장	
차 장	부시장	
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장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 과장	
실무반 편성		
근무반	담당부서	
상황관리 총괄반(5+ α) 반장 : 팀장	상황관리 (3)	재난수습 주관부서 상황관리(2) 안전총괄과(1)
	보고서 작성 (2)	재난수습 주관부서(2)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 (α)	- 긴급생활안정지원(α), 재난현장환경정비(α), 긴급통신지원(α), 시설응급복구(α), 에너지기능복구(α), 재난수습홍보(α), 물자 및 자원지원(α), 교통대책(α), 의료방역(α), 자원봉사관리(α), 사회질서유지(α), 수색구조(α)	
재난관리 책임기관(β)	하남소방서, 하남경찰서, 군부대, 한국전력공사 하남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동부지사, 대한적십자사 경기중부센터 등	

※ 비고 : 실무반 편성 및 근무인원수는 재난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실무반별 기능과 역할(제7조제1항제2호 관련)

기능 유형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	주요 업무와 역할
① 상황관리 총괄	안전총괄과 건설과 자치행정과 재난수습 주관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일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 상황판단회의자료 주관 ○ 비상근무 단계결정 및 유관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 재난상황 파악 전달·처리 및 상황관리 ○ 기상 및 수습대처 관련 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 재난위험정보 수집, 분석, 판단 ○ 13개 협업기능별 피해 및 대처상황 취합 ○ 배수펌프장 가동현황 파악 ○ 상황근무자 근무대장 작성 및 복무단속 ○ 현장상황관리관 및 중앙수습지원단 관리
② 긴급생활 안정지원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 재난구호 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 이재민 구호 등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 ○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 및 취약계층 지원
③ 재난현장 환경정비	자원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레기 수거·처리 지원 ○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지도확인
④ 긴급 통신지원	정보통신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보고 ○ 통신두절지역 인프라구축
⑤ 시설 응급복구	건설과 건축과, 주택과 상수도과, 농업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시설 현황파악 및 응급복구 지원 ○ 다중밀집시설 (아파트, 공동주택 등)대형사고 ○ 상수도분야 피해상황 총괄 및 긴급대책 추진상황 점검
⑥ 에너지 기능복구	기업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생활 불편시설(가스·전기·유류 등)피해상황 파악 ○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지원 ○ 중소기업, 소상공인 피해발생시 지원대책 추진
⑦ 재난수습 홍보	공보감사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우·태풍 등 자연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 홍보 ○ 재난대책 상황보고 전파(홈페이지, SNS, 각종 언론) ○ 각종 보도자료 작성 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지원

기능 유형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	주요 업무와 역할
⑧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안전총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관리자원 투입 실태 및 소요자원 파악 ○ 장비·인력 등 재난관리자원 인원 배치등 지원
⑨ 교통대책	교통행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통제 상황관리 및 교통수단 지원 ○ 하천변 둔치 주차장 차량 이동 조치
⑩ 의료·방역	보건위생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 피해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지도확인 ○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 재난지역 의료서비스 등 공중보건 지원
⑪ 자원봉사 관리	자원봉사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지역 자원봉사 인력수요 파악 및 지원관리 ○ 재난지역 대민지원활동 추진 ○ 자원봉사센터 운영
⑫ 사회질서 유지	하남경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현장 출입통제, 및 교통관리 ○ 재난지역 범죄예방 활동
⑬ 수색 구조·구급	하남소방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지역 구조·구급 지원 ○ 구조구급 관련 네트워크 가동(헬기, 응급장비 등) ○ 인명구조 상황 총괄조정 및 지휘 ○ 실종자 수색 및 처리업무 ○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재난관리 책임기관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업무 지원

사회재난 및 그 밖에 준하는 재난의 지원금액 산정기준(제20조제2항 관련)

구 분	산 정 기 준
1.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1. 생계지원금: 정부양곡(80kg) 5가마를 기준으로 정하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고시한 가격을 적용한다. 2. 응급구호비 및 장기구호비 등: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 별표1에서 정한 금액을 준용한다.
2. 피해지역의 복구비에 필요한 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르되, 별도의 비용 산정기준이 없는 경우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1. 감정평가사 또는 손해사정사가 평가 또는 사정한 금액 2.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영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3. 정부에서 고시한 보상금 등에 관한 고시 단가 4.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 가격 5. 실거래 조사가격 또는 소요비용 추정가격 6. 그 밖에 피해시설물 등의 가격을 입증하는 자료확인
3. 의료·방역·방제(防除)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의료·방역·방제(防除) 쓰레기 수거 활동 등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실비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4. 그 밖의 사항	법제66조제3항제3호, 제4호, 제6호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7]

대책본부 전결사항(제24조 관련)

일련 번호	사무내용	업무내용	담당관	통제관	차장	본부장
1	복무관리	비상단계 근무명령	○			
		근무자 출장명령·복명	○			
		현장관리관 파견			○	
		유관기관 파견요구		○		
2	상황관리	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			
		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후 상황 판단회의		○		
		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	
		재난 예보·경보발령	○			
		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			
3	재난안전대책 본부운영상황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
4	피해조사 및 복구	피해조사결과 보고			○	
		재난복구계획 수립				○
5	재난대책본부 회의	회의소집		○		
		회의결과 통보			○	
6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재난사태 선포여부 판단			○	
		재난사태 선포건의				○
		특별재난지역선포 여부 검토보고			○	
		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

사회재난 피해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	-----	------	-----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남/여)

피해 내용	피해 발생위치:
	피해 시설명:
	피해 물량:

「하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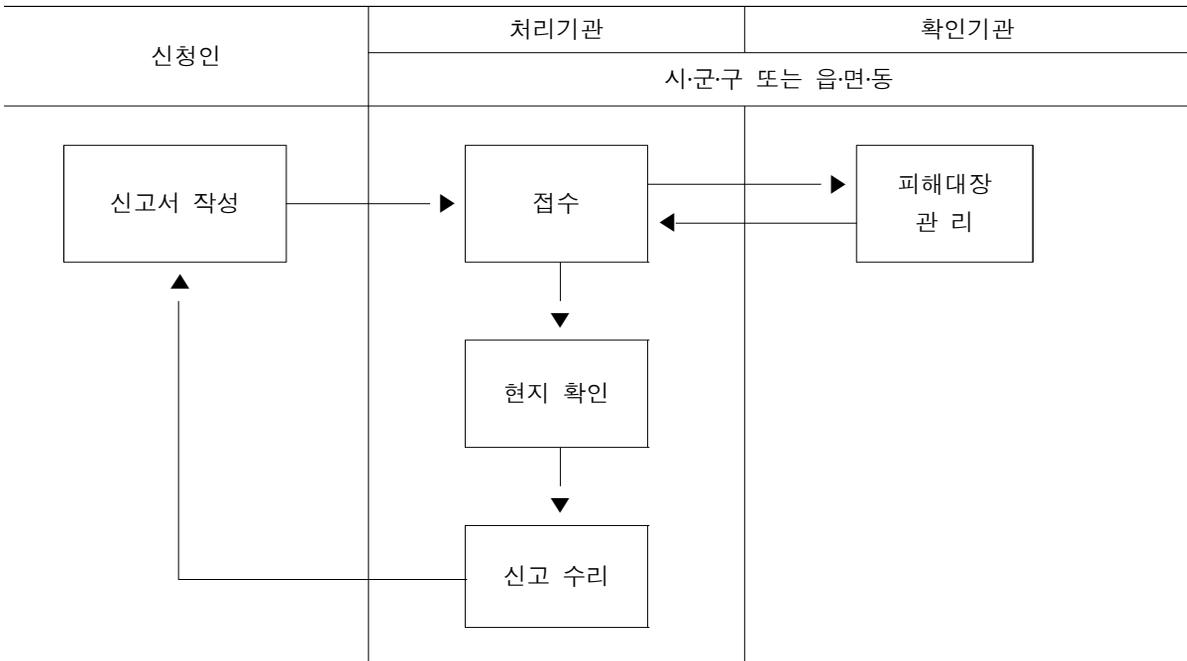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귀하

첨부서류	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관리번호:]

피해 대장

확 인 자	[중앙 직	성명	(인)
		시도 직	성명	(인)
담당과장		직	성명	(인)
조사자		직	성명	(인)

1 총괄현황

구 분	공공시설/ 사유시설
피해위치	
피해일시	년 월 일 시
피해시설명	
피해물량	
피해액	천원

2 피해 · 복구내역

피해내역	복구내역
○ 피해액 산출근거	○ 복구비 산출근거

※ 피해금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 별지 첨부 가능

3] 피해현황 사진

① "사진설명"	② "사진설명"
③ "사진설명"	④ "사진설명"

《 관계법령 발췌서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29., 2011.3.29., 2012.2.22., 2013.3.23., 2013.8.6.>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나.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둘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시·군·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해당 재난과 관련하여 제14조제3항에 따라 대규모재난을 수습하기 위한 중앙대책본부의 대응체계가 구성·운영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대책본부나 시·군·구

- 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3.8.6.>
- ② 지역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3.8.6.>
- ③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지휘 및 조정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이하 “통합지휘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휘소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 ④ 통합지휘소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통합지휘소에는 현장지휘관을 두고, 현장지휘관은 해당 시·군·구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통합지휘소의 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3.8.6.>
-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8.6.>

- 제17조(지역대책본부장의 권한 등)**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수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나 그 밖에 필요한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3.8.6.>
-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6.>
- ③ 제2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은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소속 기관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재난의 수습이 끝날 때까지 지역대책본부에서 상근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 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① 안전행정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안전행정부장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2.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시·도별 및 시·군·구별 재난안전상황실
재난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④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에 관한 상황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 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각각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장이,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에 대해서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각각 보고받은 내용을 종합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반시설의 장은 소관 업무 또는 시설에 관계되는 재난이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각각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고받은 사항이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것일 때에는 보고받은 내용을 종합하여 즉시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6.>

④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소방서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재난 발생을 신고받거나 통보받은 경우에는 즉시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의 수습활동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물자 및 자재(이하 “재난관리자원”이라 한다)를 비축·관리하여야 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민간기관·단체 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제37조에 따라 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와 인력을 지정·관리할 수 있다.

③ 안전행정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비축·관리하는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이하 “자원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④ 안전행정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은 자원관리시스템을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을 정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장비와 인력의 지정·관리와 자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34조의2(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의 마련)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통신이 끊기는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유선이나 무선 또는 위성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긴급통신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은 재난현장에서 제1항에 따른 긴급통신수단(이하 “긴급통신수단“이라 한다)이 공동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긴급통신수단의 보유 현황 등을 조사하고, 긴급통신수단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영)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운영하여야 한다.

1.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하여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작성 기준이 되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2.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서 규정하는 기능과 역할에 따라 실제 재난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 및 절차를 규정한 문서로 재난관리기관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3.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재난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 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한 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운용기준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안전행정부 장관과 협의·조정하여 이를 확정하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연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표준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⑤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 재난유형의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및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조정·승인하고 지도·관리를 하여야 하며, 소관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을 새로이 작성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이 작성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승인 하는 때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승인 결과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안전행정부장관은 위기관리 매뉴얼의 체계적인 운용을 위하여 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안전행정부장관 및 소방방재청장은 재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관리에 필요한 표준화된 매뉴얼을 연구·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8.6.]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 국가는 재난(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과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으로 한정한다)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제6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6.>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1.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자금 융자, 농업·임업·어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7.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9. 그 밖에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④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하며,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신설 2013.8.6.>

제77조(재난관리에 대한 문책 요구 등) ①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응급대책·안전점검·재난상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지시를 위반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의 명단을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자료와 함께 그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3.8.6.>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3조(대규모 재난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개정 2012.8.23., 2014.2.5.>

1. 재난 중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주무부처의 장 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의 건의를 받아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재난
2. 제1호에 따른 재난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

제21조의2(지역대책본부회의)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하기 위하여 지역대책본부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2.5.>

1.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지역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8.23.]

제24조(재난상황의 보고) ① 법 제20조에 따른 재난상황의 보고 및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2.5.>

1. 재난 발생의 일시·장소와 재난의 원인
2. 재난으로 인한 피해내용

3. 응급조치 사항
4. 대응 및 복구활동 사항
5. 향후 조치계획
6. 그 밖에 해당 재난을 수습할 책임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난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2.7.>

1. 최초 보고: 인명피해 등 주요 재난 발생 시 지체 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팩스, 전화 중 가장 빠른 방법으로 하는 보고
2. 중간 보고: 별지 제1호서식(법 제3조제1항가목에 따른 재난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산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재난 수습기간 중에 수시로 하는 보고
3. 최종 보고: 재난 수습이 끝나거나 재난이 소멸된 후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종합하여 하는 보고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응급조치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응급복구조치 상황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응급구호조치 상황으로 구분하여 재난기간 중 1일 2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2.7.>

③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재난상황과 응급조치·수습에 관한 보고 또는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2.6.]

《입법예고 의견 검토》

□ 대한적십자사 경기중부센터 의견에 대한 안전총괄과 검토 의견

조례안	의견안	의견제출사유						
<p>· 제17조(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단체의 협조체제 등) ①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 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 대한적십자사·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 및 각종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p>	<p>· 제17조제1항에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 및 각종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별표3 비상2 단계, 비상3단계 실무반 편성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적십자사 경기중부센터 명칭 명문화 요청</p> <p>· 별표4 사회재난의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적십자사 경기중부센터 명칭 명문화 요청</p> <p>· 별표5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실무반별 기능과 역할에 대한적십자사 경기중부센터 실무반 편성 명문화 요청</p> <table border="1" data-bbox="584 1527 989 1821"> <thead> <tr> <th>기능 유형</th> <th>담당 부서 및 유관기관</th> <th>주요업무와 역할</th> </tr> </thead> <tbody> <tr> <td>긴급 구호</td> <td>대한적십자사 경기중부센터</td> <td>- 긴급구호품 지급 - 이재민구호 급식 - 특수차량운행 (구호세탁차량)</td> </tr> </tbody> </table>	기능 유형	담당 부서 및 유관기관	주요업무와 역할	긴급 구호	대한적십자사 경기중부센터	- 긴급구호품 지급 - 이재민구호 급식 - 특수차량운행 (구호세탁차량)	<p>· 제17조에는 대한적십자사가 명시되어 있으나 별표3, 별표4에 실무반 편성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적십자사 경기중부센터가 누락되어 있다고 명문화 요청</p> <p>[검토의견]</p> <p>· 별표3 비상2단계, 비상3단계 별표4 실무반 편성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적십자사 경기중부센터 명문화 필요(반영)</p> <p>[검토의견]</p> <p>· 별표5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실무반별 기능과 역할은 정부표준안으로 13개 협업기능 실무반이 편성되어 있고 긴급구호, 이재민구호에 대한 임무는 긴급생활안전지원반에서 수행함으로 대한적십자사 경기중부센터는 긴급생활안전지원반을 지원할 수 있어 별도의 실무반 편성은 불필요(미반영)</p>
기능 유형	담당 부서 및 유관기관	주요업무와 역할						
긴급 구호	대한적십자사 경기중부센터	- 긴급구호품 지급 - 이재민구호 급식 - 특수차량운행 (구호세탁차량)						

《 기타 참고사항 》

〇〇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통합 표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〇〇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하며,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 가. 상시대비단계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호우·대설 예비 특보가 발표된 경우 또는 특별한 자연재난 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자연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경우
 - 나. 사전대비단계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정보 또는 호우·대설주의보가 발표되어 자연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경우
3. “비상단계”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의 효과적인 대비·대응 및 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위하여 실무반을 편성하여 〇〇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 대책본부”라 한다) 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를 말하며,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주의보 또는 호우·대설경보가 발

표되어 자연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시·도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를 말한다.

4.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자연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자연재난의 총괄·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여름철의 경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5. “예방”이라 함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6. “대비”라 함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 하에서 수행하여야 할 제반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7. “대응”이라 함은 재난 발생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8. “복구”라 함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9.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함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시·도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제2장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및 구성

제3조(시·도대책본부의 기능)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도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총괄·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요구
5. 시·구·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시·군·구대책본부장”이라 한다) 지휘 및 수습지원
6.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발령
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9. 그 밖에 시·도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시·도대책본부 구성 등) ① 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시·도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본부장은 시·도지사가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차장은 행정부시장(부지사)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3. 총괄조정관(또는 지원관)은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대책본부의 행정 지원과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4.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실(국)의 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면서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5. 담당관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당해 재난의 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이 된다.
 6. 실무반은 시·도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대응 및 수습업무를 수행한다.
-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도에 두는 재난안전상황실의 장(이하 “재난안전상황실장”이라 한다)은 사전대비단계 또는 비상단계에 통제관을 보좌하고, 그 외의 기간에는 재난안전상황실의 업무를 총괄하여 시장(도지사)을

보좌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OO시·도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 등 재난수습업무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5조(직무대행) OO시·도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4조제1항 각 목의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OO시·도대책본부 운영 및 근무체제

제6조(OO시·도대책본부의 운영기간) ① OO시·도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재난대책기간

2. 제1호 외의 기간 중 기상이변 등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OO시·도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OO시·도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OO시·도대책본부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시·도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① 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OO시·도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비단계 : 재난상황실장이 담당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재난상황실에서 실무반의 기능을 수행하며 편성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비상단계

가. 자연재난: 비상단계는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나. 사회재난: 통제관 및 담당관의 역할은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국장 및 과장이 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 실무반별 업무와 역할은 자연재난은 별표 3으로 하고, 사회재난은 별표 5과 같다.

- ② 비상단계 시·도 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제8조의 상황판단회의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시·도대책본부장은 재난발생 등에 대비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 협업에 기반한 사전 협력체계를 관계 유관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 등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제2호 따른 비상단계 시·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실무반원은 시·도대책본부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 ⑤ 시·도 대책본부상황실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시·도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상황판단회의) ① ○○시·도대책본부장은 재난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 1. 비상단계 대책본부 운영 여부
 - 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
 -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 4. 유관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시·도대책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한다.
- 1. 재난상황실장
 - 2.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 3. 재난과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 직원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
 - 4. 그 밖의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 OO시·도대책본부장은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OO시·도대책본부장에게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사람은 OO시·도대책본부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OO시·도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OO시·도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 근무인력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력은 관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OO시·도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8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한 파견근무 대상자의 명단과 비상연락체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OO시·도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11조(파견근무자의 임무 등) ① OO시·도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OO시·도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 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OO시·도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

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시·도대책본부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시·도대책본부회의의 구성·운영

제12조(○○시·도대책본부회의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도대책본부회의는 영 제21조의2조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한다.

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도 대책본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도대책본부회의는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국장 및 과장을 포함하여 시·도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시·도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시·도대책본부장 또는 ○○시·도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소집한다.

④ ○○시·도대책본부회의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이 인사이동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도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도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도대책본부회의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생한 재난을 관장하는 ○○시·도 소속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⑥ ○○시·도대책본부장이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이 되며,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한다.

⑦ ○○시·도대책본부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시·도대책본부회의의 소집) ① ○○시·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도대책본부장은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③ ○○시·도대책본부장은 ○○시·도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을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도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와 지역기상대 등 그 밖의 유관기관의 관계자도 ○○시·도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고,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⑤ ○○시·도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14조(실무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 ○○시·도대책본부회의 안건의 사전 검토, 통합지원대책 및 실무반 운영 등 실무적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도대책본부에 실무회의(이하 “실무회의”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회의는 통제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과장급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통제관은 실무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관련 재난분야 전문가, 지역 관계자 등 그 밖에 회의에 필요한 사람을 참석시킬 수 있다.

제15조(○○시·도대책본부회의의 기록 등) ○○시·도대책본부장은 실무반으로 하여금 ○○시·도대책본부회의의 내용을 기록하게 할 수 있고, 이를 ○○시·도대책본부의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장 재난상황의 관리 및 통합지원체계 구축

제16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① OO시·도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재난 대응 및 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시·군·구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② 현장상황관리관은 OO시·도대책본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

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 OO시·도대책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난현장의 대처 및 피해상황, 피해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
2. 구조·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상황 등 파악
3. 지역주민 대피 및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 대책본부”라 한다)의 수습상황
4. OO시·도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

④ OO시·도대책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대응,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7조(시·군·구대책본부의 지휘 등) ① OO시·도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대응 및 수습을 위하여 시·군·구대책본부장을 포함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거나 지휘할 수 있다.

② 시·군·구대책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재난 및 사고 발생현장 주변에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군·구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운영상황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 및 시·도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재난 예보·경보의 발령 등) ① OO시·도대책본부장은 법 제38조 및

영 제46조에 따라 지역단위의 예보·경보를 발령하거나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에게 예보·경보의 발령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재난의 위기경보는 법 제34조의5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등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예보·경보의 발령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른다.

③ 00시·도대책본부장이 제2항에 따른 예보·경보를 발령하는 때에는 중앙대책본부장과 영 제3조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대책본부장, 수습본부장, 지역대책본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19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5에 따라 작성한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 하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이외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0조(재난현장 상황관리체제) ① 00시·도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상황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현장에 접근하기 쉬운 곳에 비상지원본부

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상지원본부의 책임자는 ○○시·도긴급구조통제단장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도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이나 민간·단체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시·도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 및 여론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재난상황 모니터요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이 아닌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난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단체의 협조체제 등) ① ○○시·도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 대한적십자사·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 및 각종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도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시·도대책본부와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단체 등이 설치한 상황실 간에 각종 통신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③ ○○시·도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시·도대책본부 및 유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도대책본부장은 제3항에 따른 합동훈련을 도상훈련·전산훈련 및 실제훈련으로 구분하여 상황에 따라 필요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훈련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22조(인력 및 장비 동원체제 구축 등) ① ○○시장·도지사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 중 동원 가능한 군병력·예비군·사회봉사명령자·공무원·경찰·소방공무원·민방위대원 및 공공근로요원 등의 인력과 집계차·분뇨차 및 청소차 등 특수장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도지사는 재난 발생에 따른 응급복구에 대비하여 제1항의 인력 및 장비에 대한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원활한 응원체계 구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재난상황에 대한 조치) ○○시·도대책본부장은 자연재난 발생이 예견되거나 자연재난이 발생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한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재난상황 보고요령)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보고시기

가. 재난에 대한 사전조치사항·피해발생상황 및 응급조치사항 : 실시간 별로 수시보고

나. 최종피해상황 : 자연재난의 경우 피해원인이 종료한 후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7일 이내, 사유시설(주택, 농경지, 염전, 농림시설, 농작물, 산림작물, 어선, 어망, 어구, 수산물, 양식시설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14일 이내에 보고

다. 피해확정액 : 중앙합동조사단에 의한 조사 또는 지방합동조사단에 의한 조사의 완료 후 3일 이내에 보고

2. 보고방법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보고하되,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이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팩시밀리로 보고

3. 보고서식 :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되, 국가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의 자동집계시스템 입력양식에 의하여 보고

제25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 ① 00시·도 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금액 및 복구비용을 산정하는 때에는 별표 6의 지원금액 산정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③ 00시·도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초로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법 시행규칙 제19종의2제2호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복구를 위한 시·도비와 시·군·구비의 재원 부담률은 각각 시·도비00퍼센트, 시·군·구비 00퍼센트로 한다.(시군구 부담률이 50%를 넘지 않아야함)

제26조(사회재난의 피해상황 신고 등) ①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 신고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피해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은 피해사실을 확인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성한 피해대장은 복구계획 수립 및 피해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피해가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7조(위험정보 통보)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00시·도대책본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자연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징후
2. 자연재난 및 사고 시 국민의 대피나 통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3. 그 밖에 국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6장 보 칙

제28조(재난상황 홍보 등) ① ○○시·도대책본부장은 국민 및 주민에게 재난상황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시·도대책본부 문서관리) ① ○○시·도대책본부장 명의로 생산하는 문서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기준에 따라 작성 및 처리한다.

② ○○시·도대책본부장 명의로 공문을 시행하거나 정책결정을 위한 보고서 작성 및 회의록 등 ○○시·도대책본부 명의로 생산되는 공문서에 대하여는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전결사항)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등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 7과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재난 대응 및 수습 주관부서(제4조제2항 관련) - 예시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00시도 주관부서
미래창조과학부	1. 우주전파 재난, 2. 정보통신 사고, 3.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창조정보과
교육부	4.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교육법무과
외교부	5.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다문화교류과
법무부	6.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교육법무과
국방부	7.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안전정책관
안전행정부	8.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는 제외한다-우리도 해당 없음) 9. 정부중요시설 사고(우리도 해당 없음)	행정지원관실 “
문화체육관광부	10.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문화예술과 스포츠생활과
농림축산식품부	11. 가축 질병 12. 저수지 사고	축산과 농업정책과
산업통상자원부	13.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14. 원유수급 사고 15.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을 포함한다) 16. 전력 사고, 17. 전력생산용댐의 사고	민생순환경제과 일자리정책관 안전정책관 민생순환경제과
보건복지부	18. 감염병 재난, 19. 보건의료 사고	보건의료과
환경부	20.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21.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22.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23.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24. 황사	환경보전과 물환경관리과 환경보전과 물환경관리과 환경보전과
고용노동부	25.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기업지원과

국토교통부	26.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우리도 해당 없음) 27. 고속철도 사고 28.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29. 도로터널 사고 30.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 사고 31. 육상화물운송 사고, 32. 지하철 사고, 33. 항공기 사고 34.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지역개발과 도로공항과 치수방재과 도로과 물환경관리과 교통물류과 교통물류과
해양수산부	35.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36. 조수(潮水) 37.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38. 해양 선박 사고	해양수산과 “
금융위원회	39.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세무회계과
원자력안전위원회	40. 원자력안전 사고, 41.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안전정책관
문화재청	42. 문화재 시설 사고	문화예술과
산림청	43. 산불, 44. 산사태	산림복지과
해양경찰청	45.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해양수산과
소방방재청	46. 화재, 47. 위험물 사고 48.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49. 다중 밀집시설 대형사고 50.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 51. 지진, 52. 화산, 53. 낙뢰 54. 가뭄	대응구조과 안전정책관 토지주택과 치수방재과 “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00시·도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별표 2]

준비단계의 중앙대책본부 운영체계(제6조제1항제1호 관련)

동 기준은 중앙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 기준을 수록한 것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작성하여 제정하여야 함.

1. 상시대비단계

가. 편성기준

본 부 장	안전행정부장관	
차 장	소방방재청장	
총괄조정관	소방방재청 차장	
통 제 관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장	
담 당 관	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장	
실 무 반		
구성인원	총 10+ α 명	
보고서 작성반 (5명)	재난상황관리팀 (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팀장: 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 상황관리업무를 담당하는 5급 또는 5급상당의 공무원 2명 ○ 팀원: 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 재난정보업무를 담당하는 6급·6급상당·7급 또는 7급상당의 공무원 3명
정보수집반 (5+ α 명)	행정지원 및 분석팀(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팀장: 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 상황분석판단업무를 담당하는 5급 또는 5급상당의 공무원 1명 ○ 팀원: 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 상황분석판단업무를 담당하는 6급·6급상당·7급 또는 7급상당의 공무원 1명
	중앙행정기관 지원팀(2명)	○ 기상청, 경찰청 등 5급 또는 5급상당의 공무원 각 1명
	유관기관지원팀 (1+ α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수력 및 원자력발전을 업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기업,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부장급 직위에 해당하는 자 각 1명 ※ 겨울철 재난관리책임기관에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수력 및 원자력발전을 업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기업을 제외하고 한국도로공사를 추가한다.

나. 실무반의 기능과 역할

구 분		주요 업무와 역할
보고서 작성반	재난상황관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대책 종합상황의 관리·총괄 및 조정 ○ 기상상황 등 재난진행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 재난 대응·응급복구 상황에 관한 자료의 수집·관리 ○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및 전파 ○ 그 밖에 재난예방대책에 필요한 사항
정보수집반	행정지원 및 분석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 재난의 예측 및 분석관리 ○ 재난피해정보의 수집·분석 및 전파 ○ 국내 언론보도 등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중앙행정기관 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관 업무에 대한 시·도 및 시·군·구와 상시 연락체제 유지 ○ 상시 인력·물자동원시스템의 구축·운영 ○ 소관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대책마련 ○ 피해최소화를 위한 재난예방조치 ○ 기상정보의 수집·분석 및 전파
	유관기관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댐 관리 현황파악·분석 및 전파 ○ 국립공원 입산통제 및 등산객 관리 ○ 고속도로 교통통제 상황 파악 및 전파 등 ○ 소관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및 재난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등

다. 근무방법

- 1) 재난상황관리팀 및 중앙행정기관지원팀의 기상청공무원은 24시간 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 2) 행정지원 및 분석팀과 중앙행정기관지원팀의 경찰청공무원은 주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3) 유관기관지원팀은 여름철·겨울철 자연재난대책기간 합동근무요원으로서 24시간 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2. 사전대비단계

가. 편성기준

본 부 장	안전행정부장관	
차 장	소방방재청장	
총괄조정관	소방방재청 차장	
통 제 관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장	
담 당 관	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장	
실 무 반		
구성인원	총 12+α명	
보고서 작성반 (5명)	재난상황관리팀 (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팀장: 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 상황관리업무를 담당하는 5급 또는 5급상당의 공무원 2명 ○ 팀원: 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 재난정보업무를 담당하는 6급·6급상당·7급 또는 7급상당의 공무원 3명
정보수집반 (7+α명)	행정지원 및 분석팀(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팀장: 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 상황분석판단업무를 담당하는 5급 또는 5급상당의 공무원 1명 ○ 팀원: 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 상황분석판단업무를 담당하는 6급·6급상당·7급 또는 7급상당의 공무원 1명 ○ 지원: 소방방재청 방재대책과 자연재난 사전대비 업무를 담당하는 6급·6급상당·7급 또는 7급상당의 공무원 2명
	중앙행정기관 지원팀(2명)	○ 기상청, 경찰청 등 5급 또는 5급상당의 공무원 각 1명
	유관기관지원팀 (1+α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수력 및 원자력발전을 업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기업,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부장급 직위에 해당하는 자 각 1명 ※ 겨울철 재난관리책임기관에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수력 및 원자력발전을 업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기업을 제외하고 한국도로공사를 추가한다.

나. 실무반의 기능과 역할

구 분		주요 업무와 역할
보고서 작성반	재난상황관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대책 종합상황의 관리·총괄 및 조정 ○ 기상상황 등 재난진행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 재난 대응·응급복구 상황에 관한 자료의 수집·관리 ○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및 전파 ○ 그 밖에 재난예방대책에 필요한 사항
정보수집반	행정지원 및 분석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 재난의 예측 및 분석관리 ○ 재난피해정보의 수집·분석 및 전파 ○ 국내 언론보도 등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 호우·태풍 예비특보 및 주의보 발령 시 해당 시·도 및 시·군·구 상황관리 실태 확인 ○ 지방자치단체 사전예방조치 등 활동실적 파악 ○ 집중관리 대상지역·시설 등에 대한 현장상황관리 실태 확인
	중앙행정기관 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관 업무에 대한 시·도 및 시·군·구와 상시 연락체제 유지 ○ 상시 인력·물자동원시스템의 구축·운영 ○ 소관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대책마련 ○ 피해최소화를 위한 재난예방조치 ○ 기상정보의 수집·분석 및 전파
	유관기관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댐 관리 현황파악·분석 및 전파 ○ 국립공원 입산통제 및 등산객 관리 ○ 고속도로 교통통제 상황 파악 및 전파 등 ○ 소관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및 재난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등

다. 근무방법

- 1) 재난상황관리팀 및 중앙행정기관지원팀의 기상청공무원은 24시간 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 2) 행정지원 및 분석팀과 중앙행정기관지원팀의 경찰청공무원은 주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3) 유관기관지원팀은 여름철·겨울철 자연재난대책기간 합동근무요원으로서 24시간 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별표 3]

자연재난 비상단계의 중앙대책본부 운영체계(제6조제1항제2호 관련)

1. 편성기준

가. 비상1단계

○ 호우.대설

본 부 장	안전행정부장관	
차 장	소방방재청장	
총괄조정관	소방방재청 차장	
통 제 관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장	
담 당 관	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장	
실 무 반		
근무인원	총 16+ α 명	
상황관리 총괄반 (16+ α 명)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팀 (9+ α)	- 재난정보·수집·분석(9) .재난상황실 5급(2) - 상황근무자 .재난상황실 직원(3) - 상황근무자 .재난상황실 직원 5급 또는 직원(1) - 내부근무자 .기상청(1) .경찰청(1) .국립공원관리공단(1) - 유관기관(α 명) .여름철: 2명(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겨울철: 1명(한국도로공사)
	상황보고서작성팀 (4+ α)	- 방재관리국 직원(4+ α) ※ 상황보고서 작성, 인명·재산피해 관리, 재난정보 모니터링 ※ 방재관리국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평가팀 (2+ α)	- 방재대책과 직원(2+ α) ※ 상황관리총괄, 재난상황분석·판단시스템 운영, 중앙대책본부 운영 행정지원 등
	행정지원팀 (1+ α)	- 운영지원과 직원(1+ α) ※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추진,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반(α)	대변인실(α), 정보화담당관실(α), 예방총괄과(α), 민방위과(α), 안전제도과(α), 재난대비과(α), 119구조과(α), 119구급과(α), 복구지원과(α), 재해경감과(α), 기후변화대응과(α), 재해영향분석과(α), 지진방재과(α)	

○ 태풍

분 부 장	안전행정부장관	
차 장	소방방재청장	
총괄조정관	소방방재청 차장	
통 제 관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장	
담 당 관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 과장	
실 무 반		
근무인원	총 20+ α 명	
상황관리 총괄반 (20+ α 명)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팀 (9+ 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정보·수집·분석(9) .재난상황실 5급(2) - 상황근무자 .재난상황실 직원(3) - 상황근무자 .재난상황실 직원 5급 또는 직원(1) - 내부근무자 .기상청(1) .경찰청(1) .국립공원관리공단(1) - 유관기관(α명) .여름철: 2명(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겨울철: 1명(한국도로공사)
	상황보고서작성팀 (4+ 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재관리국 직원(4+α) ※ 상황보고서 작성, 인명·재산피해 관리, 재난정보 모니터링 ※ 방재관리국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평가팀 (6+ 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재대책과 직원(5+α) ※ 상황관리총괄, 재난상황분석·판단시스템 운영, 중앙대책본부 운영 행정지원, 상황실 장비운영 등 - 정보화담당관실 직원(1+α) ※ 재난관리시스템(NDMS) 운영 지원
	행정지원팀 (1+ 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지원과 직원(1+α) ※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추진,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반(α)	대변인실(α), 정보화담당관실(α), 예방총괄과(α), 민방위과(α), 안전제도과(α), 재난대비과(α), 119구조과(α), 119구급과(α), 복구지원과(α), 재해경감과(α), 기후변화대응과(α), 재해영향분석과(α), 지진방재과(α)	

나. 비상2단계

본 부 장	안전행정부장관	
차 장	소방방재청장	
총괄조정관	소방방재청 차장	
통 제 관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장	
담 당 관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 과장	
실 무 반		
근무인원	총 21+ α + β 명	
상황관리 총괄반 (21+ α 명)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팀 (9+ 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정보·수집·분석(9) .재난상황실 5급(2) - 상황근무자 .재난상황실 직원(3) - 상황근무자 .재난상황실 직원 5급 또는 직원(1) - 내부근무자 .기상청(1) .경찰청(1) .국립공원관리공단(1) - 유관기관(α명) .여름철: 2명(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겨울철: 1명(한국도로공사)
	상황보고서작성팀 (4+ 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재관리국 직원(4+α) ※ 상황보고서 작성, 인명·재산피해 관리, 재난정보 모니터링 ※ 방재관리국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평가팀 (6+ 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재대책과 직원(5+α) ※ 상황관리총괄, 재난상황분석·판단시스템 운영, 중앙대책본부 운영 행정지원, 상황실 장비운영 등 - 정보화담당관실 직원(1+α) ※ 재난관리시스템(NDMS) 운영 지원
	행정지원팀 (2+ 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지원과 직원(2+α) ※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추진,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반(α)	대면인실(α), 정보화담당관실(α), 예방총괄과(α), 민방위과(α), 안전제도과(α), 재난대비과(α), 119구조과(α), 119구급과(α), 복구지원과(α), 재해경감과(α), 기후변화대응과(α), 재해영향분석과(α), 지진방재과(α),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β)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지원반(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부처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 유관기관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 (상황관리총괄반) 경찰청, 기상청,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 원자력, 한국농어촌공사 제외 	

다. 비상3단계

본 부 장	안전행정부장관	
차 장	소방방재청장	
총괄조정관	소방방재청 차장	
통 제 관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장	
담 당 관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 과장	
실 무 반		
근무인원	총 31+ α + β 명	
상황관리 총괄반 (31+ α 명)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팀 (9+ α)	- 재난정보·수집·분석(9) .재난상황실 5급(2) - 상황근무자 .재난상황실 직원(3) - 상황근무자 .재난상황실 직원 5급 또는 직원(1) - 내부근무자 .기상청(1) .경찰청(1) .국립공원관리공단(1) - 유관기관(α 명) .여름철: 2명(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겨울철: 1명(한국도로공사)
	상황보고서작성팀 (4+ α)	- 방재관리국 직원(4+ α) ※ 상황보고서 작성, 인명·재산피해 관리, 재난정보 모니터링 ※ 방재관리국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평가팀 (15+ α)	- 방재대책과 직원(14+ α) ※ 상황관리총괄, 재난상황분석·판단시스템 운영, 중앙대책본부 운영 행정지원, 상황실 장비운영 등 - 정보화담당관실 직원(1+ α) ※ 재난관리시스템(NDMS) 운영 지원
	행정지원팀 (3+ α)	- 운영지원과 직원(3+ α) ※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추진,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반(α)	대변인실(α), 정보화담당관실(α), 예방총괄과(α), 민방위과(α), 안전제도과(α), 재난대비과(α), 119구조과(α), 119구급과(α), 복구지원과(α), 재해경감과(α), 기후변화대응과(α), 재해영향분석과(α), 지진방재과(α), 중앙부처(16), 유관기관(β)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지원반(β)	- 중앙부처 방송통신위원회(1), 미래창조과학부(1), 교육부(1), 국방부(1), 안전행정부(1), 문화체육관광부(1), 농림축산식품부(1), 산업통상자원부(1), 보건복지부(1), 환경부(1), 고용노동부(1), 국토교통부(1), 해양수산부(1), 문화재청(1), 산림청(1), 해양경찰청(1) - 유관기관 여름철: 2명(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 (상황관리총괄반) 경찰청, 기상청,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 원자력, 한국농어촌공사 제외	

2. 실무반의 기능과 역할

구 분	주요 업무와 역할	비고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팀 1.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2.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3. CBS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승인 4.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5. 대통령·국무총리·중앙대책본부장 및 소방방재청장 주재회의 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6.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7. 화상회의 준비·운영 8.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재난 상황실
상황 관리 총괄반	상황보고서 작성팀 1.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2. 주요인사 종합상황실 방문시 보고서 작성 * 국회관련 보고서 작성 3. 피해정보의 수집·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4. 펌프장 가동, 가저류지 확보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5. 호우피해정보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기관에 제공 6. 인명피해 상황관리 7. 재산피해 상황관리 8.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9.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10. TV 방송 모니터링 11. 민심동향, 미답사례 등 확인	방재 관리국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평가팀 1.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조정위원회 회의, 중앙대책본부회의 개최 2. 현장상황관리관 및 중앙수습지원단 파견·관리 3.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4. 대통령·국무총리·중앙대책본부장 및 소방방재청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5. 비상근무 단계 결정 6. 관계기관 비상근무자 파견 요청 7.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8. 재난발생지역의 예·경보 발령 등 의사결정 9.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10.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11.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12.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방재 대책과
	행정지원팀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운영 지원과

구 분	주요 업무와 역할	비고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긴급생활 환경정비반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 기능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업무 및 상황 관리 2.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홍보 및 지급 독려 3.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조정 4. 이재민 발생현황 관리 5. 이재민 수용 및 급식상황 파악 6.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7.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업무 	복구 지원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관리 2.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3.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지도·확인 4. 각 부처 및 시·도, 시·군·구 복구현황 파악 	환경부, 해수부 (지진방재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2. 통신시설 긴급 소통상황 파악 3.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4. 각 부처 및 시·도, 시·군·구 복구현황 파악 	방통위 (정보화담당관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공공·사유시설 피해상황 파악 2.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상황 파악 3. 공공·사유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4. 각 부처 및 시·도, 시·군·구 응급복구 현황 파악 	국토부, 농식품부, 환경부 (복구지원과, 기후변화대응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 2.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 상황 파악 3.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4. 각 부처 및 시·도, 시·군·구 복구현황 파악 	산업부 (안전제도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2.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TV·라디오·CATV·생방송 및 자막방송, KBS·재난방송 등) 3.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지원(현장 대변인, 공동취재단 구성 및 프레스센터 설치 지원 등) 4. 각종 보도자료 작성·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 지원 5. TV·라디오·신문사 등이 요청하는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 제공 6. 중앙 및 자치단체 공보담당관 관리 7. 재난발생지역·수습상황 실시간 위성중계·송출 및 재난공보담당관 운영 8. SNS상에 유통되고 있는 각종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온라인 보도 대응 	대변인실

구 분	주요 업무와 역할	비고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 기능 반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반	1. 국가방재자원 필요지역 소요현황 파악 2. 유관기관 및 자치단체, 민간보유 및 잉여자원 현황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3. 국가방재자원 지원에 대한 추적 관리	안행부, 방재청 (재난대비과)
	교통대책반	1. 재난발생지역 육상, 해상 및 항공 통제현황 파악 2. 육상, 해상 및 항공 통제상황 모니터링 3. 교통두절지역 파악 및 우회도로 개설 지원 4. 육상, 해상 및 항공분야 긴급수송 지원	국토부, 해양경찰청 (재해영향분석과)
	의료·방역반	1.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2.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3.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4.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5.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6.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복지부, 농식품부 (민방위과)
	자원봉사 관리반	1.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도·확인 2.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3.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안행부 (예방총괄과)
	사회질서 유지반	1.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2.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3. 재난발생지역 주민혼란 방지를 위한 사회질서유지	경찰청 (재해경감과)
	수색,구조·구급반	1. 재난지역 수색, 구조 업무 2. 재난지역 구급 업무 3. 재난현장 특성 및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4. 단수지역 생활용수 급수 업무	119구조과, 119 구급과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지원반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별 자연재난관리 13개 협업 기능 유형별 주요 임무 수행	방송통신위 원회, 미래창조과 학부, 교육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 광부, 농림축산식 품부, 산업통상자 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한국철도공 사, 한국전력공 사	

3. 근무방법

- 가.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팀, 상황보고서작성팀,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평가팀은 24시간 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나. 행정지원팀 및 중앙부처의 경찰청공무원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다.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지원반은 24시간 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라.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지원팀반은 여름철·겨울철 자연재난대책기간 합동근무요원으로서 24시간 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별표 4]

사회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 ((제6조제1항제2호 관련))

1. 가동기준

-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지역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실무반 편성

통제관 (주관부서 국장)	○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보좌 및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담당관 (주관부서 과장)	○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실무반 편성		
근무인원	총 10+a+β명	
상황관리 총괄반 (10+a명)	반장(1)	담당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6+a)	- 재난상황관리반(6+a) 재난상황실 (2) - 상황근무자 사회재난 총괄부서(2) 재난수습 주관부서(2)
	상황보고서 작성 (3+a)	- 사회재난 총괄부서(1), 재난수습 주관부서(2) ※ 상황보고서 작성, 인명·재산피해 관리, 재난정보 모니터링
	행정지원반 (1+a)	- 운영지원과 직원(1+a) ※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추진,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a)		대변인(a), 정보화담당관실(a), 예방총괄과(a), 민방위과(a), 안전제도과(a), 재난대비과(a), 119구조과(a), 119구급과(a), 복구지원과(a), 재해경감과(a), 기후변화대응과(a), 재해영향분석과(a), 지진방재과(a),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β)		-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지방국토관청,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 비고: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사회재난의 실무반별 기능과 역할(제6조제1항제2호 관련)

구 분	주요 기능 및 업무와 역할	
	세부 기능	주요 업무와 역할
상황총괄반	상황보고서 작성팀	○ 일일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상황관리팀 #1. 재난상황관리 기능	○ 기상상황 등 재난의 예측 및 분석·전파, 예보·경보 발령 ○ 상황판단회의 주관 ○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 재난위험정보 수집, 분석, 판단 ○ 관계부처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상황 관리 ○ 현장상황관리관 및 중앙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 각종 여론·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행정지원팀	○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및 방문자료 작성 ○ 상황실 통신·전산장비 운영 및 지원 ○ 상황근무자 명령 및 복무 단속 ○ 본부장·차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협업 기능	#2. 긴급 생활안정 지원 기능	○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 긴급생활안정 및 사유재산 피해 지원대책 검토 - 재난지역 세제, 금융, 전기·통신료, 보험료 등 감면 검토 ○ 피해주민 구호 등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 ○ 피해주민 심리상담 지원
	#3. 긴급통신 지원기능	○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보고 ○ 통신 두절지역 통신인프라 복구 ○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4. 피해시설 응급복구 기능	○ 피해시설 현황파악 및 응급복구 지원
	#5.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 기능	○ 국민생활 불편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 ○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6. 재난관리자원 지원 기능	○ 재난관리자원 투입 실태 및 소요자원 파악 ○ 장비·인력 등 재난관리자원 응원 및 배치 등 지원
	#7. 교통대책 기능	○ 교통 두절구간(도로, 해상, 항공)실태 파악 보고 ○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8.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 기능	○ 감염병 및 전염병 등 방역대책 지원 ○ 방역·제독 및 기동방역·제독반 편성·운영(이동초소 등) ○ 재난지역 의료서비스 등 공중보건 지원
	#9. 재난현장 환경 정비 기능	○ 재난현장 환경오염 피해상황 파악보고 ○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기능	○ 재난지역 자원봉사 인력 수요 파악 및 지원 ○ 재난지역 긴급대응인력 투입 ○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등
	#11. 사회질서 유지 기능	○ 재난현장 출입통제,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12. 재난수습 홍보 기능	○ 재난수습상황 브리핑 및 보도자료 작성 등 언론 대응 ○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 ○ 보도사항, 신문 스크랩 분석 보고 및 자료 수집·전파 ○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13. 재난지역 수색, 구조·구급 기능	○ 인명구조 상황 총괄조정 및 지휘 ○ 고립자의 구조, 사상자의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 사상자 응급처리를 위한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도·확인 ○ 군부대와 구조·구급활동 협조 및 지원 ○ 실종자 수색 및 처리업무 등

사회재난 및 그 밖에 준하는 재난의 지원금액 산정기준(제19조 관련)

구분	산 정 기 준
1. 국비와 지방비 부담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복구비 등의 지원은 국고 부담률을 7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2.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1. 생계지원금: 정부양곡(80kg) 5가마를 기준으로 정하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고시한 가격을 적용한다. 2. 응급구호비 및 장기구호비 등: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 별표1에서 정한 금액을 준용한다.
3. 피해지역의 복구비에 필요한 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르되, 별도의 비용 산정기준이 없는 경우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1. 감정평가사 또는 손해사정사가 평가 또는 사정한 금액 2.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영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3. 정부에서 고시한 보상금 등에 관한 고시 단가 4.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 가격 5. 실거래 조사가격 또는 소요비용 추정가격 6. 그 밖에 피해시설물 등의 가격을 입증하는 자료확인
4. 의료·방역·방제(防除)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의료·방역·방제(防除) 쓰레기 수거 활동 등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실비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5. 그 밖에 사항	법제66조제3항제3호, 제4호, 제6호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7]

사도대책본부 위임·전결사항(제22조 관련)

업 무 내 용		전 결 권 자				본부장 결 재
		담당관	통제관	총괄 조정관	차 장	
본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급이상 공무원 파견 또는 차출요청			○		
	5급이하 공무원 파견 또는 차출요청		○			
	유관기관 근무자 파견요청	○				
	실무반 편성 및 운영	○				
	실무반 및 근무자 복무 지도·감독	○				
	재난일지 기록 배치	△				
	본부 물품관리 운용	△				
본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본부회의위원 위촉 및 해촉		○			
	회의안건 작성 등 운영		○			
	회의소집 방침결정				○	
	회의소집 일시 및 장소 등의 변경	○				
재난 교육·훈련계획 수립, 실시 및 지도·감독			○			
각급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지휘·감독					○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협의 및 지시			○			
예비특보, 주의보 및 경보 발령시 각종 조치사항		△				
상황근무자 및 실무반 매뉴얼 작성에 관한 사항			○			
재난위험지역에 대한 주민대피명령					○	
방재용 자재의 수송 및 지휘에 관한 사항			○			
본 부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비 내시 및 배정요구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급량비 등 지출요구	○				
수난구조에 관한 사항	헬기 등 주요장비 지원요청 및 협의		○			
	수난구조상황 파악	○				
군지원 사항	군 장비 및 인력지원 요청 및 협의		○			

업 무 내 용		전 결 권 자				본부장 결 재
		담당관	통제관	총괄 조정관	차 장	
	군 장비 및 인력지원사항 파악	○				
구호활동에 관한 사항	구호활동 지원요청 및 협의		○			
	구호활동상황 파악	○				
수송.통신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간 통신시설 설치		○			
	통신시설의 수리 및 보수	○				
응급복구에 관한 사항	응급복구용 자재·장비·인원의 동원		○			
	응급복구용 자재·장비·인원 동원사항 파악	○				
피해종합 대책에 관한 사항	피해상황 자료수집	△				
	재난사태선포 건의 검토보고					○
	일일상황보고서 작성 및 배부	△				
	중앙수습지원단 현지 파견			○		
	중앙수습지원단 활동상황 파악	○				
재난복구계획 수립 및 복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합동피해조사단 요원지출 및 현지 파견		○			
	합동피해조사 결과보고		○			
	자연재난복구비용단가 협의조정		○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검토보고					○
	재해복구계획의 수립 및 심의·확정				○	
	재난복구계획 통보	○				
	중앙합동조사단의 구성·운영		○			
	피해조사 담당공무원의 교육·육성		○			

업 무 내 용		전 결 권 자				본부장 결 재
		담당관	통제관	총괄 조정관	차 장	
	재해복구보조금의 집행잔액 사용 승인		○			
	복구용 자재수급 대책	○				
	복구사업의 지도.점검.관리		○			
	일정규모이상 복구사업 실시설계 및 공사준공전 사전심의		○			
	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운영.관 리 및 결과보고		○			
	복구사업의 실시설계 및 공사준공 사전심의를 관한 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			
자연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 구성. 운영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내용 이행 을 위한 관리.감독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절차 완료 전 시행 개발사업의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			
	개발관련 위원회의 방재분야전문위 원 추천	○				
	재해원인조사.분석 및 평가		○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운영		○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				
	피해조사 등 타인의 토지 출입 또		○			

업 무 내 용	전 결 권 자				본부장 결 재
	담당관	통제관	총괄 조정관	차 장	
는 일시사용					
내풍설계기준의 보완 요구	○				
홍수에.경보와 각종 수문관측 및 수문정보에 관한 자료 파악	○				
지진방재대책 조사.연구 및 지진재해경감 대책		○			
내진설계대상 시설물에 대한 보완 요구	○				
중앙행정기관의 긴급지원계획 보완 요구	○				
긴급지원 대상지역 지원단 구성 및 현장과견		○			
긴급지원체계수립지침 작성.배포	○				
긴급지원계획에 따른 점검, 평가.포상		○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유지관리 평가		○			
지역자율방재단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			
한국방재협회 위탁 시행		○			
자연재해 예방.복구 및 대책에 관한 지역본부 정기 평가.포상				○	
대통령, 국무총리 지시사항 처리				○	
본부장, 차장 지시사항 처리			○		
그 밖에 재난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				

사회재난 피해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	-----	------	-----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피해 내용	피해 발생위치:
	피해 시설명:
	피해 물량: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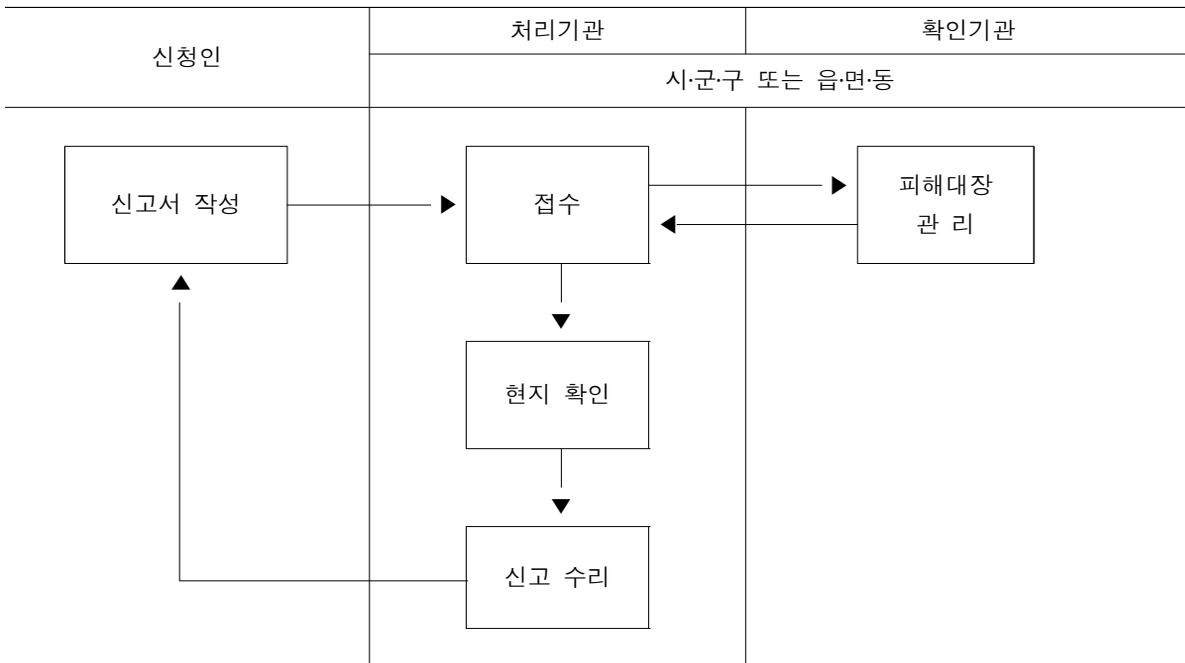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귀하

첨부서류	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관리번호:]

피해 대장

확 인 자	중앙 직	성명	(인)
	시도 직	성명	(인)
담당과장	직	성명	(인)
조사자	직	성명	(인)

1 총괄현황

구 분	공공시설/ 사유시설
피해위치	
피해일시	년 월 일 시
피해시설명	
피해물량	
피해액	천원

2 피해 · 복구내역

피해내역	복구내역
○ 피해액 산출근거	○ 복구비 산출근거

※ 피해금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 별지 첨부 가능

3] 피해현황 사진

① "사진설명"	② "사진설명"
③ "사진설명"	④ "사진설명"